

산업경영공학

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

개정 일자: 2026. 6. 11.

시행 일자: 2027. 1. 1.

제1조(논문연구) 석사과정은 최대 3학점까지, 박사과정은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
제2조(세미나) 석사과정은 최대 3학점까지, 박사과정은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
제3조(졸업자격시험)

1. 전공종합시험: 석사과정은 이수과목 중 3개 과목을, 박사과정은 이수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한다.
2.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(어학): 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영어성적(토익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 영어성적)을 득한 자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3. 토익 700점에 준하는 공인영어시험의 점수(등급)은 다음과 같다.
 - ✓ OPIC: IM2
 - ✓ TOEIC Speaking: Intermediate Mid 2
 - ✓ New TEPS: 300
 - ✓ TOEFL: 80

제4조(논문심사)

1. 석사과정: 학위논문과 유사한 분야로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편 이상 주저자(교신저자 포함)로 발표(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)한 경우 논문제출 자격을 준다.
2. 박사과정: 학위논문과 유사한 분야로 SCI급(SCI, SSCI, SCIE 등)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(교신저자 포함)로 게재한 경우 논문제출 자격을 준다. 단, 한국연구재단 등재지(등재후보지 포함) 및 SCOPUS 등재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3.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이 “게재가(accept)”의 평가를 받은 것도 인정한다.
4. 운영
 - 1) 심사 청구 요건: 논문 요건(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 게재)을 충족해야 논문 발표 심사를 할 수 있다.
 - 2) 심사위원의 선정: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심사위원장이 확정한다.
 - 3) 박사과정은 논문 제안서 심사를 통과한 그다음 학기부터 논문 발표 심사를 할 수 있으며, 논문 제안서 심사는 내부 위원(3명 이상)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5조(박사 학위의 세부 전공 인정 기준) 과목 이수 요건과 학위 논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부 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.

1. (과목 이수 요건) 세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(예: 기계안전공학 세부 전공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과목 이수).
2. (학위 논문 요건)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가 해당 세부 전공과 유사해야 한다(예: 기계안전공학 세부 전공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안전 관련 주제).

제6조(기타)

1.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